

약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10일
상호(명칭)			법인등록번호	
보고인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	주소		전화번호	
변경 내용	변경 전			
	변경 후			

「약취방지법」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약취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을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약취검사기관 지정서 원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